#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556

발의연월일: 2020. 10. 16.

발 의 자:이개호·서영교·윤재갑

김병기 · 홍성국 · 송갑석

위성곤 · 김승남 · 신정훈

주철현 · 강병원 · 서삼석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먹거리 생산과 소비의 연계, 식품안전, 복지 및 영양관리 등의 정책 프로그램을 포괄하는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성 중심의 먹거리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먹거리 정의(Justice)를 실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국내외로 확산되고 있음. 이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먹거리에 대해 종합 정책적으로 접근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먹거리를 보장받고 먹거리가 갖는 공동체적 가치의 내재화와 함께 먹거리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임.

이에 지역먹거리 계획 수립 및 이에 대한 국가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먹거리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경제를 확산시키고 먹거리 보 장 및 지속가능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7조,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

#### 법률 제 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을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과"로, "달성·유지"를 "달성·유지, 식품지원"으로 한다.

제23조의2를 제23조의4로 하고, 제23조의2 및 제23조의 3을 각각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 제23조의2(취약계층 등에 대한 식품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등 모든 국민에게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식품 지원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23조의3(지역먹거리 계획의 수립·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주민의 먹거리를 보장하고 먹거리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먹거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먹거리 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중 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먹거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지역먹거리 계획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급식지원센터 또는 먹거리통합지 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④ 국가는 지역먹거리 계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⑤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지역먹거리 계획을 수립·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 제7조(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 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 | 급) ----- 안 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과---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 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농산 물 생산 단계에서의 안전성 확 보, 농업과 식품산업의 발전, 적 정한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 목표 달성・유지 등에 필요한 --- 달성·유지, 식품 지원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 다. <신 설> 제23조의2(취약계층 등에 대한 식 품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는 취약계층 등 모든 국민에게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식 품 지원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 여야 한다. 제23조의3(지역먹거리 계획의 수 <신 설> 립·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주민의 먹거리를 보 장하고 먹거리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먹거리 계 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먹 거리 계획의 수립 · 추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먹거리위원회를 둘 수 있 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의 지역먹거리 계획에 따른 사 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 여 공공급식지원센터 또는 먹거 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 ④ 국가는 지역먹거리 계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의 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게 제시할 수 있다.
- ⑤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지역먹거리 계획 을 수립·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올바른 정보 제공 등) (생 략)

제23조의2(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제23조의4(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등) (현행 제2 3조의2와 같음)